

2026년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7월 6일

용인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예정 직무분야	채용예정 직 급	채용 기간	채용 인원	직무내용	근무 시간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년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지원 ·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·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·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·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 등 지원 ·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,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	주 40시간

※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.

2 근거 규정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 및 제27조의3(과전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)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)
-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
- 「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 채용자격 기준

*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,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거주지 : 제한없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응시요건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정책지원관	<p>○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○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 <p>- 정책 기획·개발·분석, 조사·감사, 법제·법무, 예산·결산, 재무·회계, 홍보, 의원보좌, 지방자치단체사무 관련 근무경력</p>

■ **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**

- (공무원경력) ○급 또는 ○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(민간경력)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/ 학사학위 취득 후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)

■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. 다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 및 「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제15조제9항)

■ 경력기간은 **주 40시간 근무기준**(주 40시간 미만 근무시, 시간 비례 계산)

■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 제외

■ **경력증명서상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** 되어야 함

■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(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별표5의3)

4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 제4항)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 (개별 역량면접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 - ※ 정책지원관 분야의 경우 응시자 사전조사서 작성(면접당일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 응시자의 경험, 사례, 의견 등을 1장 분량, 20분 이내로 작성)한 후 질의응답 실시

[평정항목] 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[불합격 기준]

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또는
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
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[추가합격자 결정]

-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 표
2026. 7. 6.(월)	2026. 7. 14.(화) ~ 7. 16.(목)	2026. 7. 22.(수) 전후	2026. 7. 23.(목) 전후	2026. 7. 24.(금) ~ 7. 27.(월) 中	2026. 7. 30.(목) 전후
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공고 확인 : 용인시의회 홈페이지(council.yongin.go.kr) 채용정보란 참조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**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**
- 인성검사·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6 원서접수

- 접수 기간 : 2026. 7. 14.(화) ~ 7. 16.(목) / 3일간
- 접수 방법 : 방문 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**응시수수료 : 7천원**
 - ※ 단, 인터넷 접수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- ※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환급 가능

방문 접수

- 접수 처 : 용인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(시의회 1층)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※ *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**
- 용인시청 민원여권과(시청 1층)에서 응시수수료(수입증지)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
등기우편 접수

- 주소 : (우)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
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**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**
 - ※ **현금 및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**
 - ※ **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**
 - ※ **우편봉투 겉면에 “2026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**
 - ※ **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(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)**
 - ※ **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**
 - ※ **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(☎031-6193-3968)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.**

7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 고
①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1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(용인시 수입증지) 납부 후 제출 ○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(기준 : 응시원서 접수 당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증명서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 -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-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: 가족관계증명서 (「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6조)	필수
②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※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	필수
③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	-	필수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	-	필수
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※ 정규직으로 상근 근무한 경우에도 상근(주40시간 근무) 여부 반드시 표기 ※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에 주당 근무시간, 담당 업무(경력인정범위), 발급 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, <별지 제5호>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○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관련분야임(담당업무)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,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○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비정규직, 프리랜서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(예시 :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) 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국민연금,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※ 재직 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 	필수

구 분	내 용	비고
⑥ 최종학교 졸업 (학위)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○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	필수
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(http://www.nhis.or.kr) 또는 1577-1000번에서 발급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※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	필수
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자에 한함 	
⑨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자에 한함 	
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(별지서식 제6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사항만 작성(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) 	필수
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(별지서식 제7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분야만 발취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(해당 없는 항목 삭제) 	필수
⑫ 동의서 각 1부 (별지서식 제8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자필 서명 필수) 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(자필 서명 필수) 	필수

○ 주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-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
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특히 **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**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의
경우 반드시 **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**
- 제출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
※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양면인쇄 금지

8 근무기간 및 보수

- 근무기간 : 1년(단,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)
- 연 봉 :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경력 등을 고려하여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결정함

임용예정 직무분야	임용직급	연 봉 액		근무 시간
		상한액	하한액	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70,782천원	50,272천원	주 40시간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-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 - 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
-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·고용보험 적용
 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9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서류 등에 허위 기재,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,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(발급번호, 발급일자, 발급담당자 등의 위조·변조를 포함)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, 경력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하며,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결정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(council.yongin.go.kr) 채용정보란에 게시합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
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 제1항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, 같은 영 제3조의5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